

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투자기관경영평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4항중 “시정연구관·투자관리관”을 “정책기획관·재정기획관”으로 하고, 동조제6항중 “관계 전문가”를 “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 또는 관계 전문가”로 한다.</p> <p>제4조제1항중 “6월 30일”을 “8월 31일”로, 동조제2항중 “7월31일”을 “9월 30일”로, 동조제3항중 “8월 31일”을 “10월 31일”로 한다.</p> <p>제6조제3항중 “5월 20일”을 “7월 31일”로 한다.</p> <p>제7조제2항중 “10월 31일”을 “사업연도 개시 35일전”으로 한다.</p> 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.....</p> <p>○委員長 李聲九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을 審議하겠습니다.</p> <p>同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께서는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金璠會委員 하나 좀 물어보았는데, 專門委員, 여기 都市計劃 이 業務를 一線에 移讓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. 市民들에게 신속하게 福祉增進을 위하고 서비스 改善을 위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符合되는 이런 業務改善인데, 이 問題를 都市整備委員會하고 專門委員하고 協議를, 意見 交換을 한번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듣고 싶어요. 執行부에다.....</p> <p>○委員長 李聲九 專門委員 答辯하세요.</p> <p>○專門委員 安錫洙 이 관계에 대해서 確認한 結果 이 問題에 대해서 既存의 都市整備委員會에서 區單位的 都市計劃 關聯業務에 移管한 것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 서로 深度 깊게 審査도 하고 協議도 하고 事前 調律된 結果에 의거해서 우리 委員會에 이 案件을</p>	<p>提出했습니다.</p> <p>이상입니다.</p> <p>○金璠會委員 됐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聲九 曹相彩委員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曹相彩委員 曹相彩委員입니다.</p> <p>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은 서울市中에서, 다시 말해서 執行部에서 큰 勇斷을 내렸다고 봅니다. 진작 實施되어야 할 事項이라고 생각하고, 또 한편으로는 市民을 대신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自治區에 이런 業務가 增加가 됨에 따라서 人員과 또 豫算이 支援이 되어야 되는데, 市 執行部에서는 行政權限 委任을 한 대신 人員과 또 그 豫算을 받드시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, 정말로 큰 決斷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○委員長 李聲九 더 質疑하실 委員 없으십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이상으로 議事日程 第3項에 대한 質疑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</p> <p>그러면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을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습니까?</p> <p>(「없습니다」하는 委員 있음)</p> <p>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</p> <p>(議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(다음 페이지에 계속)</p>
---	---